

## 1-2-7

#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관련 관계자 회의

### □ 관련공약

- 공 약 명(1-2-7) :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
- 공약내용 : 교통약자(장애인, 노약자, 임산부 등)에 대한 교통수단 보급 (저상버스, 특별교통수단)으로 이동편의 증진과 삶의 질 향상 및 사회참여 확대

### □ 소통실적

- 일 시 : 2017.9.4.(1차 회의), 2017.9.27.(중형버스 시승체험)
- 장 소 : 강원연구원 대회의실
- 참 석 : 18개 시·군 담당자 및 관계자(상담센터 및 업체)
- 내 용 : 강원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정책수립을 위한 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수렴 및 중형저상버스 소개

### □ 실적자료



관계자 회의



중형저상버스 시승체험

- 붙임 1. 시·군 회의 개최결과 보고 1부.  
2. 특별교통수단 관외운행 확대 추진계획 1부.

##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 수립 관련 시군 회의 결과 보고

- ❖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 수립을 위한 18개 시·군 담당자와의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.

### □ 회의개요

- 일시/장소 : 2017. 9. 4.(월) 14:00~16:00/강원연구원 대회의실
- 참석 : 시·군 담당자 등 23명(도 2,시군 17,업체 4)※강릉,영월,정선 미참석
- ※ 회의진행 : 박효기 ((주)진화기술공사 도로교통본부 도로부서장/실장)

### □ 주요내용

-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18개 시·군이 제출해야 될 자료(교통수단, 편의시설 현황 등) 전달 및 작성시 주의사항 설명 ※ 시·군 증진계획 용역업체를 통해 자료 취합
- 2018년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지원(안)에 대해 전달 설명
- 특별교통수단 광역화를 위한 사전준비절차 논의
  - 이용요금, 이용대상자, 운행범위, 운전기사 인건비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해야 할 필요성 강조(가이드라인 제시 필요)
  - 원주시에서 '18년 광역이동지원센터로 콜센터 통합의사 표명

### □ 향후계획

-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세부기준 등을 규정하기 위해 장애인 단체, 노인 단체 등과 개별적 면담(9월 중순)
-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·군 공문시달
  - 시·군 18년 본예산 작업에 필요(9월)
-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 수립을 위한 제2차 시군회의 개최(9월 말)

# 회의 사진



◆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 수립과 관련한 시군 합동회의



◆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 수립과 관련한 시군 합동회의

# 회의 내용

1. 특별교통수단 이용 대상을 설정하고 있는 관련법령이 모호하여 실질적인 장애인 이용에 제약이 되고 있음. 따라서 이에 대한 세부 규정이 필요

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제6조(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 등)

- ① 법 제16조제7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.  
[개정 2012.11.30]
1. 「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」 제2조제1항에 따른 1급 또는 2급 장애인으로서 버스·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
  2. 6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버스·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
  3.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교통약자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람
  4.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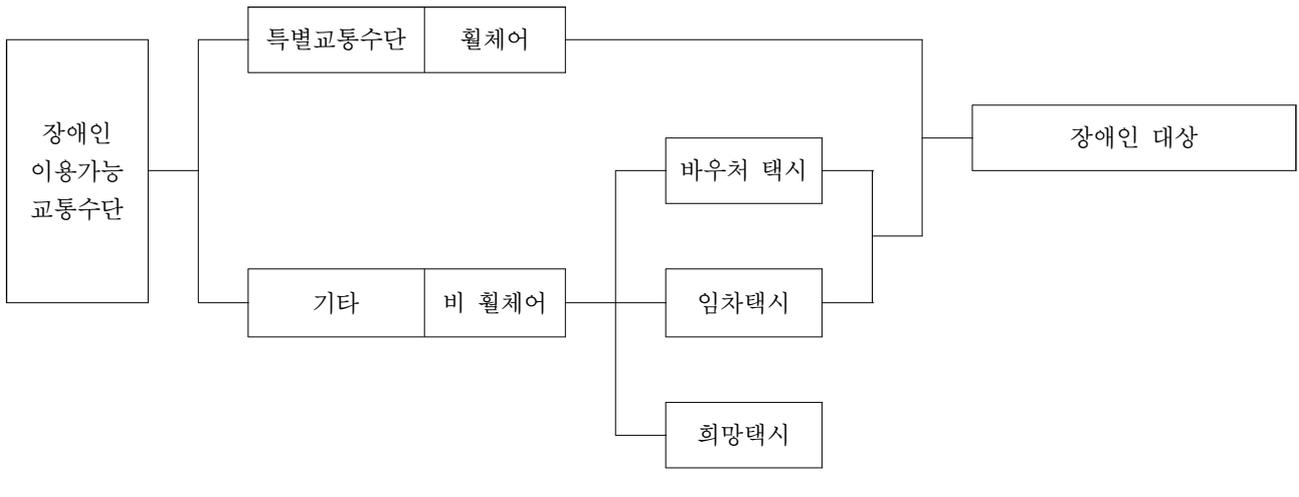
<표> 보건복지부 장애인 판정기준

구분	장애 유형	1급	2급	3급	4급	5급	6급
신체적 장애	지체 장애	상지 절단					
		하지 절단	○	○	○	○	
		상지 관절					
		하지 관절	○	○	○	○	○
		상지 기능					
		하지 기능	○	○	○	○	○
		척추 장애		○	○	○	○
		변형 장애					○
	뇌병변장애		○	○	○	○	
	시각장애		○	○	○	○	○
	청각 장애	청력					
		평형			○	○	○
	언어 장애						
	신장 장애			○			
	심장 장애		○	○			
	호흡기 장애		○	○			
	간 장애		○	○			
	안면 장애						
장루·요루 장애			○				
간질 장애							
정신적 장애	지적 장애	○					
	자폐성장애	○	○				
	정신 장애	○					

2. 특별교통수단의 관제 및 콜센타 통합운영에 대한 필요성에 동의하고, 현재 단독으로 운영하는 원주시의 경우 가능한 2018년에 통합화에 참여하기를 희망함.

3. 법으로 정해진 특별교통수단 이외의 추가 교통수단확보에 대한 필요성 제기

<표> 장애인 이용가능 교통수단



- 주1) 장애인 바우처 택시는 일반인도 태울 수 있는 영업권을 보장받으면서, 장애인 승차 시 일반 택시요금 보다 저렴하게 받고, 차액은 지자체에서 보전을 받음
- 주2) 임차택시는 개인택시를 전일 임차해 운영하기 때문에 일반택시 영업은 할 수 없으며 운행요금과 이용시간은 기존 교통약자 전용차량과 동일하게 적용되며, 택시 외부에서 바로 식별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한 장애인 전용택시임  
 임차택시 이용 대상은 광주광역시의 경우 1. 2급 장애인, 3급 지적·자폐성 장애인으로 보호자 및 동반가족이 3명까지 동승할 수 있고 운행시간은 오전 7시-밤 8시까지 일 13시간씩 365일 연중무휴로 운행되고 있음
- 주3)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희망택시는 농어촌버스 미 운행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이동권을 확보하고 교통편의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운행하는 택시로 지자체로 보터 보조를 받음.

4. 2018년 확보가 예상되는 복권기금 약 40억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을 인식(효율적 사용방안 설계사 검토 예정)

5. 특별교통수단 운영비의 인건비에 대한 지급기준이 통일되기를 희망함.

6. 기타 사항(기초자료 포함)은 지자체별로 문서로 제출하시기로 함.

# 특별교통수단 관외운행 확대 추진계획(안)

## I 추진배경

-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보장하고자 「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」 및 「강원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」를 제정(13.3.15.)하여 특별교통수단의 도입·운영을 위한 여건 마련
- “특별교통수단 운영비 지원”은 2018년도 복권기금사업으로 선정되어 예산 배분이 예정된 사업임(기재부 복권기금위원회의 심의 완료)

## II 그간 운영실태 및 추진결과

- 특별교통수단 도입
  - 대 상 : 18개 시·군(1·2급 장애인 200명당 1대 도입 의무)
  - 사업기간 : 2013년 ~ 계속사업
  - 사업량 : 법정대수 도입 110대 (현재 99대 도입완료)
  - 사업비 : 4,400백만원(국·도·시군비 : 50·25·25) ※ 대당 4천만원

※ 특별교통수단 연도별 도입현황

(단위 : 대)

구분	합계	2013년	2014년	2015년	2016년	2017년	비고
차량 도입	99	24	41	29	2	3	

- 광역이동지원센터(콜센터) 설치(2013.11월~)

- 상담원 12명(전일제 6명, 시간제 6명)
- 연중무휴 07~24시 운영 ※ 배차처리 : 366건/일

(단위 : 건)

구분	합계	2014년	2015년	2016년	2017년 10월까지	비고
배차처리	303,578	10,442	74,311	107,778	111,047	

### III 광역화 운영 개요

#### □ 사업현황( '17년 기준)

- 특별교통수단 도입비 : 3대, 120백만원(국 60, 도 30, 시군 30)
- 특별교통수단 운영비
  -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(도) : 1개소, 500백만원(도 500)
  - 특별교통수단 운영(시·군) : 18개 시군, 4,800백만원(시군 4,800)

#### □ 문제점

- 운영비 부담과 차량대수 부족으로 운영시간 및 이용지역 제한
  - 인건비 부담으로 군 단위 지역에서는 공휴일 휴무
  - 차량대수 부족으로 시군 관내로 제한된 서비스 제공으로 타 지역 이동시 이동 제한

#### □ 개선방안

- 복권기금을 확보, 특별교통수단 운영 지원·확대(5억→40억)
  - 4,025백만원을 투입, '18년 특별교통수단 도내관외운행 본격시행
  - (계속) 광역이동지원센터 기능 강화 ※ 연중무휴 24시간 운영
  - (신규) 이용대상자 중 휠체어 이용자부터 도내 광역이동 지원
  - (신규) 운영시간 일원화 지원 ※ 평일 07~22시, 휴일 09~18시
- 국비와 지방비 활용, 특별교통수단 도입 대폭 확대
  - 840백만 원을 투입, '21년까지 120대 도입 계획
- 특별교통수단 운영지침 및 매뉴얼 마련
  - 이용요금 적정화, 운전기사 자격 및 인건비 등 시군별 격차 조정
  - ※ 도에서 표준안을 마련, 편차가 큰 시군부터 조례 조정 권고

➔ 재정확대를 통해 광역화 시행, 교통복지 道 실현

## IV 세부 운영사항

### □ 관외운행 세부 추진계획

#### ○ 관외운행 구분

- 도내운행(휠체어 이용자) : 1단계 통합 추진(2018년)
- 도내운행(비휠체어 이용자) : 2단계 통합 추진(2019년)
- 도외운행 : 최종 통합 추진(2020년)

※ 1단계 추진 대상자는 1회 등록으로 도내 어디에서든지 차량이용 가능

#### ○ 시군별 관외운행 전담차량 지정(1~2급 장애인수 기준)

- 3대 이상 : 장애인수 2,000명 이상 시군(춘천, 원주, 강릉)
- 2대 이상 : 장애인수 1,000명 이상 시군(동해, 속초, 삼척, 홍천)
- 1대 이상 : 장애인수 1,000명 미만 시군(그 외 시군)

#### ○ 이용요금 : 기본요금(4km까지 1,100원), 추가요금(km 당 100원)

- 관외이동시 대기료는 1시간까지 무료, 초과 시 30분당 2,000원
- 주차료, 통행료 본인부담. 단, 기초수급자에 한해 통행료 면제
- 타지역 차량을 호출 시 왕복료 부담

※ 도내운행(휠체어이용자) → 도내운행(비휠체어이용자) → 도외운행의 순  
으로 요금통일화 추진(관내운행과 일괄추진 권장)

단, 위원회 심의와 운영규정 개정과 맞물려 있어 시군별 개별시행 권고

### □ 운영시간 일원화 세부 추진계획

#### ○ 실수요가 적은 야간근로시간대를 피해 최소준수 운행시간 설정

- 최소준수 운행시간 : 평일 07~22시, 휴일 09~18시
- 야간근로시간대는 예약 당번제로 운영(시군 여건에 따라 개별 시행)

### □ 광역이동지원센터(콜센터) 기능 강화( '18년 시행)

#### ○ 운영시간 연장 : 24시간 연중무휴

#### ○ 별도 운영 중인 원주시 콜센터를 통합 운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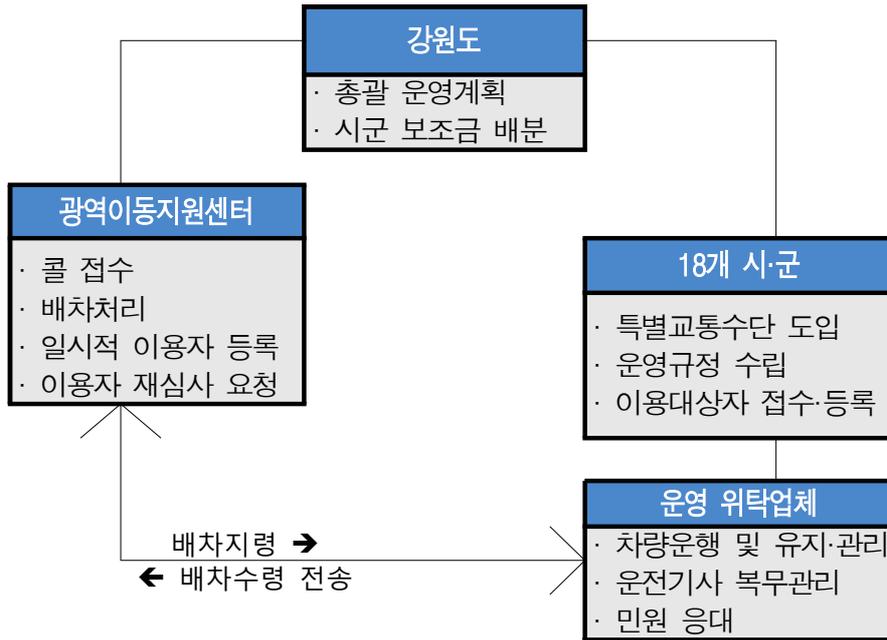
#### ○ 이용대상자 재심의요청 및 이용대상자 일원화 관련 권고권한 부여

※ 시군에서는 홈페이지·Fax·직접방문을 통해 접수된 이용신청 심의·등록

## V 운영체계 및 기관별 역할

### □ 특별교통수단 운영체계 및 기관별 역할

#### ○ 특별교통수단 운영체계



#### ○ 기관별 역할

기관명	역할	비고
강원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특별교통수단 총괄 운영계획 수립</li> <li>·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위탁</li> <li>· 시군 보조금 배분</li> </ul>	
광역이동지원센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콜 접수 및 배차처리</li> <li>· 특별교통수단 일시적 이용자 등록 및 이용등록자 재심사 요청</li> <li>· 시스템(통신 및 전기 등) 문제 시 유지보수업체에 긴급지원요청</li> </ul>	
18개 시·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특별교통수단(차량) 도입</li> <li>· 시군 운영규정 수립 및 추진</li> <li>· 운영위탁 계약 추진 및 관리</li> <li>·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접수 및 등록</li> </ul>	
위탁업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특별교통수단 운행</li> <li>· 지출 관리(유류비, 유지보수비, 인건비, 요금 등)</li> <li>· 기사 관리(운전기사 복무표 계획 및 조정)</li> </ul>	

## VI 향후계획

- 특별교통수단 관외운행 운영지침 및 매뉴얼 마련( '17.12월 중)
- 자체 운영 원주시 콜센터 통합 운영 개시( '18.1.1.)
- 도내(휠체어이용자) 관외운행 본격 시행( '18.1.1.)
- 강원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개정( '18.1월 중)

※ 2018년 복권기금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조속한 조례개정 필요

- '18년 사업비 배분 : 4,025백만원(국비 4,025)( '18.2월~)

## VII 행정사항

### □ (강원도) 특별교통수단 예산배분 및 운영지침 수립

- 강원도 교통약자의 운영 매뉴얼 마련 시군 배포( '17.12월)
- 강원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개정( '18.1월)
  - (재정지원)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일부지원 내용 개정
- 시군 보조금 교부 및 도 직접사업 집행 : 4,025백만원(전액국비)
  - 기본운영비 교부 : 기본운영비 1,338백만원
  - 분기별 교부 : 실적에 따른 운영비 2,133백만원

(백만 원)

구 분	'18년 예산(국비-기금)		비고
	금액	산출내역	
합 계	4,025		
기본운영비 지원 (시·군 지원)	1,338	28대 × 47,786천원	1·2급 장애인 2,000명 이상 시군: 3대 1·2급 장애인 1,000명 이상 시군: 2대 그 외 시·군 1대 운영비 지원
관외운행거리 지원 (시·군 지원)	1,215	99대 × 12,272천원	운행실적에 따라 가변 가능 (1,800원/km 지원)
법정근로시간외 운행거리 지원 (시·군 지원)	918	99대 × 9,272천원	
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(도 직접)	554	상담원 16명 인건비	

□ (광역이동지원센터) 24시간 연중무휴 운영 준비

- 상담원 충원 및 좌석배치, 근무조 편성( '17.12월)
- 원주시 콜센터 통합에 따른 원주이용자 이용내역 이관( '17.12월)
- 관제시스템 개선 완료에 따른 시스템 사용법 교육( '18.1월)

□ (18개 시·군) 도 수립 특별교통수단 운영 총괄계획에 협조

- 도 수립 운영계획 및 지침에 따라 시군 운영규정 변경
- 이용신청접수 및 이용대상자 등록(재심의 요청 시 협조)

□ (운영 위탁업체) 이용대상자 등록 및 차량운행 관리

- 관제시스템 이용을 위해 고정 IP가 부여된 컴퓨터 구매
- 차량과 운전기사 매핑 일정표 등록 및 변경요인에 따라 수시수정
- 운영관련 정산 및 수입금 관리